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58
----------	-------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배준영 · 김석기 · 김용태
서명옥 · 한지아 · 이상휘
송석준 · 엄태영 · 김승수
최보윤 · 이종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리튬 · 니켈 · 코발트 · 희토류 등 전략광물은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무기 등 국가 핵심 산업 및 자원안보에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국가의 경제 · 산업 · 안보 등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주요국의 전략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그 공급망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관계 법률은 전략광물의 수급 안정화에 필수적인 비축목표, 비축일수, 방출기준 등 전략광물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민관공동비축, 해외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 해외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광물 확보를 통한 수급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략광물의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에 관한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여 비축목표 등을 포함한 전략광물 비축계획 수립, 민관공동비축, 세제지원 등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지원,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전략광물 확보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자원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전략광물의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원안보를 확보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전략광물”이란 국가의 경제·산업·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광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광물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전략광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연차별 전략광물 확보계획, 비축목표, 해외개발 대상국 우선순위, 재원의 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전략광물의 지정·고시, 비축의무, 수급위기 진단·평가, 전략광물

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전략광물비축및해외개발위원회를 둠(안 제7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광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전략광물을 비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공동비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사.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광물 수급 상황의 악화로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비축된 전략광물을 방출·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정부는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 또는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지원 및 손실지원, 해외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위험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자.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특별회계 및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관련 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차. 비축된 전략광물을 임의처분한 자, 비밀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략광물의 지정, 공급·수요 관리, 비축, 해외자원개발의 지원 및 재원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자원안보를 확보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광물”이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 중 국가의 경제·산업·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광물을 말한다.
2. “비축”이란 전략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전략광물을 사전에 구매하여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관공동비축”이란 국가와 민간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전략광물을 비축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외개발”이란 전략광물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개발사업자”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전략

광물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전략광물의 비축 및 해외개발과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략광물의 비축 및 해외개발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한 경우 국가의 종합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과 관련된 시책(이하 이 조에서 “지역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지역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략광물의 비축 및 해외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정책의 추진체계

제5조(전략광물의 지정·고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략광물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전략광물의 지정 기준·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광물의 효율적 비축 및 해외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외 전략광물 수급 동향, 가격 등 환경 변화로 기본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광물의 비축 및 해외개발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광물 수급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전략광물 확보계획
4. 전략광물의 비축목표, 비축일수 등 비축에 관한 사항
5. 전략광물 수급 안정성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6. 전략광물의 해외개발 대상국 우선순위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전략광물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재원의 조달계획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전략광물 관련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전략광물비축및해외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략광물비축및해외개발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전략광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전략광물비축및해외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전략광물과 관련된 기술·예산·자금·인력 등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 전략·정책에 관한 사항
3. 전략광물 수급위기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4. 전략광물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5. 제2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6. 그 밖에 전략광물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협력) 정부는 전략광물의 비축 및 해외개발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2.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관련 해외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한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정보교환
3.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관련 공동 정책 조사·연구 등 국제협력
4.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관련 공동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국제협력
5. 그 밖에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자원보유국과의 협정등의 체결 등) ① 정부는 전략광물의 비축 및 해외개발을 위하여 자원보유국과 양해각서(MOU)·투자협정·공동개발협정 등(이하 이 조에서 “협정등”이라 한다)의 교섭 또는 체결을 추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협정등의 목적 및 필요성
2. 대상 국가, 대상 광물, 사업 범위 및 기간
3. 공급망 안정 및 국가자원안보에 대한 기여도
4. 재정 소요 및 재정 확보 방안
5. 국내 기업의 참여 가능성 및 위험 관리 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자원보유국과 협정등의 교섭 또는 체결을 추진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정부는 협정등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협정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정등의 체결 절차·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전략광물의 비축

제11조(비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광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전략광물을 비축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략광물 비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비축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광물 비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광물 비축계획(이하 이 조에서 “비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광물 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전략광물의 종류 및 비축물량에 관한 사항
3. 전략광물 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략광물 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광물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민관공동비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광물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공동비축사업(이하 “민관공동비축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민관공동비축사업 참여기업과 비축물량, 보관

기간, 방출조건 및 손실 부담 범위 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략광물의 민관공동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관공동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비축물자의 특성, 비축물량, 비축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사용료를 환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전략광물의 민관공동비축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비축자원의 방출·사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광물 수급 상황의 악화로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전략광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민관공동비축사업의 민간사업자

에게 비축된 전략광물을 방출·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된 전략광물의 방출·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내기업의 해외개발 전략광물 우선 구매) ① 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개발한 전략광물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광물의 국제 가격이 급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략광물의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내기업이 해외개발한 전략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비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수행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예산 또는 제23조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2항에 따른 구매의 대상, 요건, 기준가격의 산정, 물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비축물량의 임의처분 금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략광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민관공동비축사업의 민간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계약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전략광물 비축물량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해외개발 및 민간투자 지원

제17조(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보조·용자) ① 정부는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을 위한 조사에 드는 비용
2.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3.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에 따르는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및 개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3.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4. 그 밖에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용자받은 해외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용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보조 또는 용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는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투자위험보증사업) ① 정부는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투자위험보증기관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보증기관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의 한도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손실지원) ① 정부는 해외개발사업자가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을 산정할 때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와 지원액의 산정, 제2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비상시 해외개발 전략광물의 반입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전략광물 수급의 악화로 인하여 전략광물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략광물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한 전략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해외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개발 전략광물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해외개발 전략광물의 국내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개발사업자가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자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외개발 전략광물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전략광물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장부·서류·물건과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5장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특별회계

제2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전략광물의 비축 및 해외개발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회계를 관리·운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출연금
2. 차입금
3. 전략광물 판매 수익금
4.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자로 인한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사업 지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28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지출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장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기금

제29조(기금의 설치)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전략광물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전략광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0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정부 출연금, 특별회계 전입금, 투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지분투자, 해외개발, 긴급 비축 확대 및 그 밖의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비축 및 해외

개발사업의 지원에 사용한다.

제3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④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에 관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자
2. 행정기관의 공무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3. 제9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전략광물 비축물량을 임의로 처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입명령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해외개발 전략광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규정의 벌칙에 따른다)

2.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에 관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